

외국인학생학사관리규정

5-2-14

규정번호 5-2-14
제정일자 2018.8.27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유학생지원팀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의 8에 근거하여 우리대학 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‘외국인 학생’은 ‘외국인 유학생’ 및 ‘외국인 교환학생’으로 구분한다.

② ‘외국인 유학생’(이하 “유학생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, 제7호에 따라 우리대학 학위과정에 입학한 외국인학생을 말한다.

③ ‘외국인 교환학생’(이하 “교환학생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외국대학간의 교류 협정에 의해 단기간 우리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학생을 말한다.

제 3 조 (교육과정) 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과 복수(공동)학위 및 우리대학 학위수여과정으로 구분한다.(개정 2019.06.17.)

② 일반 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며,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③ 복수(공동)학위 교육과정 및 우리대학 학위수여과정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대학과교육과정운영에따른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9.06.17.)

④ 교환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양교 간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학적관리 및 학적변동 보고) ① 외국인학생의 학적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② 유학생지원센터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의 4에 근거하여 학적 변동사항(휴학, 제적, 자퇴, 졸업, 행방불명 등)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외국인유학생및연수생관리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9.06.17., 2026.7.20.)

③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원하지 않는다.

④ 외국인학생의 출석인정은 학사내규 제5조의 2(출석인정)를 따르되, 출석인정 사유에 따른 출·입국 발생 시 비행일이 속한 날을 가산하여 인정한다.

⑤ 복수(공동)학위 과정 및 우리대학 학위수여과정 유학생의 졸업요건은 외국대학과교육과정 운영에따른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19.06.17.)

제 5 조 (어학능력) ①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(TOPIK, TOPIK IBT) 2급 이상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하고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(TOPIK, TOPIK IBT)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(개정 2019.06.17.,2025.9.29.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2-14 외국인학생학사관리규정

② (삭제 2019.06.17.)

③ (삭제 2019.06.17.)

④ 일부과정(교환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, 예체능 학과 및 기술직 학과 입학학생,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 입학학생)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입학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.(신설 2019.06.17.)

⑤ 복수(공동)학위과정 및 우리대학 학위수여과정 입학학생은 한국어 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(신설 2019.06.17.)

제5조의2 (수업이수 제한)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은 학년별 취득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전체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25.9.29.]

제 6 조 (징계) 외국인학생의 징계는 우리대학 학생상벌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장학혜택) 외국인학생의 장학혜택은 우리대학장학규정에 따른다.(개정 2026.7.20.)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06.17., 2026.7.20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제8조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5조제1항, 제5조의2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, 제7조, 제8조)